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2025.02.05.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체육회 법인카드(보조사업비 카드 포함)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보조금, 자체예산 등)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장 집행지침

제3조(업무추진비 사전 기본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
2.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참석자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등)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세부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 ① 사전 기본결재 전결금액은 체육회의 위임전결사항에 따른다.

② 집행품의 시 사전 기본결재기안문, 회의록, 카드전표, 소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 결재 기안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2.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총지출액)

④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금지) 업무추진비 결재 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재할 수 없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제한
2. 23시 이후 사용 제한
3. 자택근처 사용 제한
4.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제한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

(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한된 시간·지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공개) 체육회는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해야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11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를 밝힌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 ① 회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내역을 기록 관리·보관한다.

② 회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카드 사용대장을 기록하고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법인카드는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사용·관리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회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② 법인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로 신고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③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카드 사용대장에 기록한다.

부 칙(2025.02.05.)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5조제2항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제1호서식】

법인카드 관리대장

매수	사용부서	사업명	카 드 번 호

【별지 제2호서식】

법인카드 사용대장

카드번호	수령일 수령자	반납일 반납자	사용금액(원)	사업명 및 사용내역	사용장소	담당자

* 수령자, 반납자, (보조사업비카드)담당자란에는 정자(正字)로 서명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 분 실 카 드 :

○ 분 실 일 시 : 202 . . . (시 분)

○ 분 실 장 소 :

○ 유선신고일시 : 202 . . . (시 분)

○ 분 실 사 유 :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2 . . .

신고자 부서 :

성 명 : (인)